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·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「도로교통법」이 개정(법률 제20375호, 2024. 3. 19. 공포, 9. 2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6~7월 중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145조제

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
2.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·전문인력·업무관리체계 및 재정 능력을 갖출 것
3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

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·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
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
3. 업무추진계획서

③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
④ 경찰청장은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

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결과
2.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

⑥ 경찰청장은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7조의5(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)

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
2. 기술의 국제교류, 국제 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·전문인력·업무관리체계 및 재정 능력을 갖춘 것
3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춘 것

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·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
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

3. 업무추진계획서

③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
④ 경찰청장은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경찰청장은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

(제84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4제3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(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말한다)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경찰청장은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,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제145조제3항제1호, 제147조의3제2항제1호	지정취소	-	-
나.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			
1) 제8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제145조제3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2) 제8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제145조제3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3) 제8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제147조의3제2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
4) 제8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제147조의3제2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84조의2(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 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.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·전문인력·업무관리체계 및 재정 능력을 갖출 것 3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·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. 업무추진계획서 ③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전담

<신설>

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
④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업무추진결과

2.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

⑥ 경찰청장은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7조의5(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)

①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

2. 기술의 국제교류, 국제 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·전문인력·업무관리체계 및 재정 능력을 갖출 것

3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

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전담기관의 조직·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

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

3. 업무추진계획서

③ 법 제147조의3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·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.

④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

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경찰청장은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통기획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59